

보 증

제 1조 피보증채무·보증채무의 이행

- ① 보증인은 채무자의 당사에 대한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한 보증의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채무는 제외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한 은행
 2.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주식회사
 4.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주식회사
 6. 기타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
- ② 제 1항의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대부거래표준약관과 이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 2조 보증한도

보증한도(원본, 이자, 지연배상금, 부채채무 일체를 포함한다)는 아래금액으로 한다.

연 대 보 증 인	보 증 한 도	변경된 보증한도
주 [redacted]	금 이억육천만 원 금 원	금 원 금 원
연 대 보 증 인 (추 가 입 보)	보 증 한 도	변경된 보증한도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제 3조 상계의 제한

보증인은 당사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있기 전에는, 채무자의 당사에 대한 기타의 모든채권에 의한 주채무와의 상계로써 당사에 대항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 4조 담보·보증 등의 변경·해지·해제

보증인이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당사는 다른 보증이나 담보를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한다.

제 5조 담보·보증약정과 관계

- ① 보증인이 채무자의 당사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보증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무적 적으로 적용된다.
-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당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증인이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